

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시민회관 사용자가·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해야 사용료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사용예정일 1일전이라도 계약취소 신청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주민위주로 조례개정

□ 검토의견

동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혁차원에서 기존의 공급자인 관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